



기록으로 돌아보는 1953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시간 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 중심으로



2018년 7월 2일,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최초 제정되어 1996년까지 11차 개정, 1997년 재제정되어 2018년 현재까지 28차 개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변화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를 국회기록보존소에 소장된 기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현주

국회도서관
기록정책과 주무관
onionp@nanet.go.kr

1. 1953년~1988년 :

법정 근로시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최초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2조(근로시간)

-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주 44시간으로 단축하였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주 56시간까지, 휴일근무 포함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였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35년 만에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실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42조(근로시간)

-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1997년 3월 13일 「근로기준법」이 재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가능성에 직면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논의를 본격화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극복의 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表) | |
|---|---------------------------------|
| 案 號 | 提案年月日: 1989. 3. . 提案者: 勞動委員長 |
| 1. 代議件 提案趣旨 | |
| 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이 1988年 11月 25日 李相模議員外 79人으로부터 發議된 후 同年 12月 5日 李仁濟-盧武鉉-張真漢議員外 97人, 1989年 1月 25日 金仲龍議員外 34人이 各各 發議하여 3個出案이 當委員長에 回附되어 있음. | |
| 나. 當委員長에서는 回附된 3個改正法律案中 2個改正法律案(李相模議員外 79人, 李仁濟-盧武鉉-張真漢議員外 97人, 發議)에 대하여 1988年 12月 13日 第 144回議會(定例會) 第 12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各各 承認, 勞動關係改善委員會를 構成하여 同改正法律案을 審査報告하도록 하였으며, 1個改正法律案(金仲龍議員外 34人, 發議)에 대하여는 1989年 2月 29日 第 145回議會(臨時會) 第 1次委員會에서 審査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承認, 이러 議案에서 있는 改善案中小委員會에서 討論 審査하도록 하였음. | |
| 176- | |

| 勤勞基準法案 | |
|---|-------------------------------------|
| 案 號 | 提案年月日: 1997. 3. 10. 提案者: 康號勞動委員長 |
| 1. 提案趣旨 | |
| 1997年 3月 10日 第185會 國會(臨時會) 第5次 憲法審判委員會에서 勤勞基準法案을 委員會案으로 提案하기로 함. | |
| 2. 提案理由 | |
|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雇傭關係를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勤勞時間制度를 유연화하는 등 雇傭關係 및 勤勞時間制度를 현실적 實情에 適合하도록 勤勞基準制度를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生活을 保障, 향상시키며 實現되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 근로기준법중개정
법률안(1989. 3. 9.
의결)
근로기준법중개정
법률안(1997. 3. 10.
의결)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3. 2003년~2017년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68시간

1997년 「근로기준법」이 재제정된 이후, 2003년 9월 15일 제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의결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당시 개정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2조(근로시간)

- ①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기준법(제2차 개정안(代案))

제42조(근로시간)
①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본회의(제2차) 2003. 8. 29

제16대 국회 제24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좌)

2003. 8. 29(목) 14:00 ~ 17:00

제16대 국회 제24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우)

2003. 8. 29(목) 17:00 ~ 19:00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좌) (2003. 8. 29. 의결), 제16대 국회 제242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우)(2003. 8. 29.)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여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실근로시간단축 공익위원회’(2012. 3.~2013. 4.),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2014. 9.~2016. 9.)를 운영하였다.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 9. 15.)에는 1주일을 7일로 산정하고, 휴일 포함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약)

전 문

한계 한국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차 없는 경제 사이의 분수령에 서 있다. 압축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경제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형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정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절박한 과제로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하여 절박한 과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직적 비정규직 청년층은 극심한 위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사회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동한 헌신적 노동자에게 대한 국민적인 격려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 아래, 2014년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제 대안’을 발표하고 정부에게 관련 구제안 발의를 촉구하는 등 하였다.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그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경험, 2014년 12월 기본 합의에서 비롯된 원칙과 방향, 대국적 약속에 입각하여 핵심 의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대한 논의를 전개한 끝에 마침내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해 합의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노력, 장시간 근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제고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정책안 개발과 조직적 필요성이라는 점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해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한걸음이지만 조속한 논의는 아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길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장단기 미래대응과 협력을 지향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이 마련되는 만큼 가능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조영을 위한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재기하기 될 것으로 확인하면서 다음에 과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2015. 9. 15) [출처: 노동 시간구조개선 특별위원회]

▲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창출특별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2012. 7. 11.)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 등

4. 2018년 현재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제28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휴일포함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민간 기업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좌) (2018. 2. 28. 의결)
 제20대 국회 제350회 제6차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우) (2017. 3. 15.)



▲ 청년일자리 대책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2018. 3. 15.)
 [출처: 청와대]

그 밖에 국회의 논의 과정이 담긴 200여 개의 주요 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보다 자세한 소개는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청와대 www.president.go.kr
2. 고용노동부 www.moel.go.kr
3.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4. (대통령 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 www.eslc.go.kr
5. 국회미디어자료관 <http://w3.assembly.go.kr/multimedia>
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7. 국회회의록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jsp>